

건설산업동향

DDA/FTA 건설 관련 논의 동향

빈재익

2005. 10. 24

- 문제제기 3
- DDA와 건설산업 4
- DDA 2차 양허안 중 건설산업 관련 사항 11
- FTA 협상 이슈 중 건설산업 관련 사항 18
-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23

요 약

- ▶ **건설시장의 개방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DDA, 정부조달협정, FTA 등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필요**
 - WTO 회원국간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부조달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달협정 재협상이 시작되었고, 양자간 무역협상인 FTA 협상을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이미 종료하였고, 일본, 중국, 아세안, 미국 등과는 진행 중이거나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 **DDA 협상은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2006년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WTO 회원국들은 2005년 5월까지 2차 양허안을 제출하고 각 협상그룹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 **정부조달협정의 재개정은 기설정의제(BIA:Built-In Agenda)에 의해 1997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음.**
 - 현재 38개국만 가입되어 있는 정부조달협정에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변화를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협정의 적용범위 확대, 차별적인 조치와 관행의 철폐, 협정의 단순화 및 개선 등 세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 공급자 자격심사 등 조달절차, 개도국 우대, 양허 내용의 수정, 분쟁해결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음.
- ▶ **우리나라가 제출한 2차 양허안은 기존의 개방 내용에 계약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양허를 추가**
 - 수평적 양허의 방식을 통해, 국내법인 및 개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은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 대하여 3개월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제출
 - 건설업의 경우, UR에서 양허가 유보되었던 발전시설 공사를 새로이 양허한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양허 내용 없음.
- ▶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 수행**
 -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
 - 서비스 교역과 관련하여서는 양허표 기재방식, 수량규제 방식, 최혜국 대우 포함 여부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으며, 정부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양허하한선 인하, 양허대상기관의 확대 등의 사항에 협상이 집중
- ▶ **UR 이후 외국 기업의 진출 현황, DDA 양허안 혹은 FTA 협정문 등을 감안할 때 기존에 개방된 것 외에 추가로 개방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인식한 실질적인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DDA 및 FTA가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문제제기

- 2001년 11월, 과거의 어느 다자간무역협상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DDA 협상 출범
 - 우루과이 라운드(UR) 의정서의 추후작업에 관한 시간계획을 규정한 기설 정의제(BIA: Built-In Agenda)에 따라 국가간 서비스 교역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여야만 하는 상황
 - 공산품 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정도도 미약하며, UR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무역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 필요
-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역시 협정 발효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협정을 개선하고 협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추진한다는 BIA 규정에 의해 개정협상 진행
-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 수행
 - 1947년부터 1994년까지 GATT(Genre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에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127건인데 비해 1995년 WTO체제 출범이후 9년 동안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76개나 되는 등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WTO로 대표되는 세계화와 함께 현재의 국제경제 질서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 2004년 4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04년 11월 29일 한-싱 FTA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고, 2005년 7월 12일에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FTA 협상의 최종 타결이 공식 발표됨.
 - 현재, 한-일, 한-아세안, 한-멕시코, 한-캐나다, 한-메르코수르(MERCOSUR), 한-인도, 한-미국,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사전 연구작업 수행 중
 - 내용면에서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뿐만 아

나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체결을 지향하고 있어 WTO의 다자간무역질서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범위보다 더 큰 자유화를 유지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음.

- 개정 협의가 진행 중인 DDA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개방 대상 중의 하나가 건설시장이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주요 시장인 일본, 중국, 아세안 등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DDA(정부조달협정 포함)와 FTA가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조사 필요

■ DDA와 건설산업

(1) DDA 협상방법 및 전개과정

- DDA 협상은 UR 협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채택
 - 특정분야의 협상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협상 결과에 필수 불가결한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어렵기 때문임.
 -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한 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된 결과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
- DDA협상은 당초에는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은 소강상태를 보임.
 - 농업협상의 경우 세부원칙의 수립시한을 2003년 3월 31일로, 양허안 제출시한은 2003년 9월 10일에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정하였으며 서비스 협상의 경우 양허안 요청시한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양허안 제출시한은 2003년 3월 31일로 정하였음.
 -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도, 당초 예정된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현상의 세부협상방식에 대한 합의시한 및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시한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DDA협상 전반이 난항을 겪고 있었음.

- 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는 DDA 협상을 중간점검하였으나 농업, 싱가포르 이슈 등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¹⁾됨.
- 이후 정치적 노력으로 DDA 협상은 모멘텀을 다시 얻어 “7월 패키지” 합의에 이룸.
- Zoellick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 대표와 Lamy EC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2004년 2월 11일에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하계휴가가 개시되기 전인 7월까지 DDA 주요부문의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7월 패키지 (the July package)"라고 불리는 2004년 7월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문에 대한 합의는, 일반이사회 의장인 일본 대사 Oshima와 WTO 사무총장 Supachai가 준비한 본문 7개항과 4개부속서로 구성된 초안과 농업부문 합의를 위해 결성된 주요 5개국 모임(미국, EU, 호주, 인도, 브라질)의 7월 30일 합의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7월 패키지는 농업, 면화, 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발, 싱가포르 이슈,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분야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
- 농업분야의 경우, 국내보조, 수출보조, 시장접근 등 3개 분야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면화이슈는 농업협상의 부분 이슈로서 협상하되 동 분야의 개발 측면을 강조하는 문안을 선택
-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관세인하공식,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칸쿤 각료회의 당시의 Derbez Text에 추가함에 따라, 관세조화 공식과 분야별 접근을 핵심요소로 규정한 Derbez text를 기본 골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협상세부원칙에 대해서는 개도국 입장을 고려하여 협상한다는 기본틀이 마련되었음.

1) 싱가포르 이슈는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해 선진국은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이들 이슈가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도국의 국내제도를 개편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어떠한 싱가포르 이슈도 공식협상의제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양 진영간 의견차이가 컸다. 농업분야에서는 시장접근(관세인하방식, 관세상한 설정 등의 이슈 포함),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개도국들은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내지는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를 요구했으나, 미국과 EU는 농업분야의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철폐, 생산제한 직접지불보조금 및 최소허용보조금 등의 급격한 감축 등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 싱가포르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이슈는 DDA 협상의제에서 삭제되고, 무역원활화만 협상 세부원칙에 따라 협상을 개시한다는 문안이 채택
- 7월 패키지의 성공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은 전체적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DDA 협상 종료 시한을 설정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2005년 12월에 개최될 홍콩 각료회의의 전반적인 목표 설정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 현재, 2006년말까지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각국은 서비스 분야의 개선된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한 상태

(2) 서비스 협상

- WTO 회원국들은 WTO 설립 당시 서비스 산업의 국제교역에 대한 일반 협정에도 서명하였는데, 이것이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B에 규정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임.
- GATS내에 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양허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W/12)에 기재된 ① Business Services, ②통신, ③건설²⁾, ④유통, ⑤교육, ⑥환경, ⑦금융, ⑧의료, ⑨관광, ⑩문화, ⑪교통 ⑫기타 등 12개 업종을 GATS 협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간주
- 양허표에서 서비스 분야 및 하위 분야에 포함되는 서비스 활동의 상세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서비스명 아래에 UN에서 사용하는 Provisional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상의 해당업종번호를 [] 안에 별도로 기재
- GATS는 서비스 무역을 생산자-소비자의 이동 및 생산요소의 이동 유무를 기준으로 4가지 형태로 구분

2)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반면,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는 정부조달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적용 대상이다.

- mode 1(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예를 들면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원격 교육처럼, 서비스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mode 2(서비스의 해외소비)는 해외유학, 해외치료, 관광처럼,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 가서 서비스를 소비(이용)하는 것이다. mode 3(상업적 주재)은 외국학교의 국내 분교,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 설립처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mode 4(자연인의 이동)는 자회사 임원, 회계사의 이동처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연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임.
- mode 4(자연인의 이동)은 mode3(상업적 주재)와 연관 여부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데, 기업내 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 기업 대표자(representative), 판촉인력(service-sales person)은 기업체 임직원으로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이동하는 자연인인 반면, 수입국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독립적인 자영 서비스 공급자나 기업의 임직원으로 서비스 공급계약의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파견되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service-seller)는 상업적 주재와는 관련이 없는 자연인의 이동에 속함.
- GATS상의 의무는 일반적 의무와 구체적 의무로 구분
 - 일반적 의무는 양허표 기재내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무로서 최혜국대우, 투명성 등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의무와 국내규제, 통보의무 등 양허된 분야에만 일괄적용되는 의무로 다시 구분 가능
 - 최혜국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즉, 서비스협정상 한 분야에서 특정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업자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모든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업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혜국대우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나, 특별히 일시적으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 투명성 의무에는 서비스 협정에 따라 ① 각 회원국 정부는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공포의 의무, ② 각 회원국은 외국의 기업과 정부가 서비스 분야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설치하여 하는 의무, ③ 양허를 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가 변경될 경우 이를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통보의무 등이 포함

- 국내규제란 국내규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 개방된 분야에서도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내규제는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성, 투명성, 동등성, 국제기준 등을 국내규제의 원칙으로 적용하여야 함.
- 구체적 의무는 각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의무로서 시장접근(Market Access),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추가약속(Additional Commitment)을 포함
-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분야는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양허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시장접근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일단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일부 제한할 경우에는 네가티브 방식이 적용되어 제한사항을 양허표에 기재한 경우에만 제한조치로서 기능할 수 있음.
- 내국민대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인데, 상품분야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일반적인 원칙인 반면 서비스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양허한 분야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의무가 면제됨.
- 추가약속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사항 이외에 자격, 표준, 면허에 관련되는 문제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대한 양허 내용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어야 함.
- 양허한다는 것은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
- 서비스 분야의 개방 내용은 양허표에 기재되는데, 서비스 양허안은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업 및 비농산물관세인하 협상과 달리, 제도와 규제 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여, DDA 협상이 종료되면 동 양허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그 수준에서 후퇴할 수 없게 됨.
- 양허표는 수평적 양허와 분야별 양허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양허는 모든 서비스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 제한 등이 포함되는 반면, 분야별 양허는 특정 서비스 부문에만 적용되는 사항임.

(3) 정부조달 협상

- 현행 GPA는 UR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EC(EU 25개 회원국 포함), 캐나다 등 38개국이 참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³⁾
 - 정부조달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가장 먼저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동 협정은 가입국에게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체결되었으며 적용범위 또한 개방국 중앙정부기관의 양허 하한선 이상의 물품조달로 한정
 - UR중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과정에서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되는 분야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먼저, 물품조달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조달과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조달행위가 처음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었음.
- 현재 진행중인 GPA 개정협상은 GPA 발효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협정을 개정하고 협정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추진한다는 GPA 제24조 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진행되어 온 것임.
 - 보다 많은 국가들의 GPA 가입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변화를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협정의 적용범위 확대, 차별적 조치와 관행의 철폐, 협정의 단순화 및 개선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 2004년까지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은 일부 조항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공급자 자격심사 등 조달절차, 개도국 우대, 양허 수정 및 정정, 분쟁해결 등 주요 조항들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음.
 - 공급자 자격심사 관련 사항은 공급자의 조달참가능력 확인 이외의 기타 문제로 인해 공급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심사절차의 단순화 등 기술적인 논의 진행
 - 조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GPA에 반영하는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조달제도의 경험을 기초로 정보기술의 활용이 조달절차의 간소화, 효율성 및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개정 논의에 참여

3) 우리나라에서 GPA가 발효된 것은 이보다는 1년 늦은 1997년 1월 1일부터임.

- 개도국 사항은 개도국들이 개발·재정·무역상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G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 처음부터 엄격한 의무부과로 개도국들의 협정참여가 배제되는 것보다는 적절한 특별대우 부여를 통해 우선 개도국들이 G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GPA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현 GPA는 체약국들이 자국의 양허기관과 양허품목을 정할 때 상대국들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보수국간 협정인데,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도를 떨어뜨리고 GPA 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를 반감시켜 개도국 등 비체약국들이 GPA 가입을 기피하도록 하게 할 소지가 높음.
- 예컨대 중앙정부의 서비스나 물품 조달의 경우 개도국 기업은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다른 개도국이나 선진국의 13만 SDR 이상의 조달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나, 선진국 기업은 개도국 조달시장 참여가 용이할 것이므로 개도국 입장에서는 같은 양허 하한선이라도 시장 개방도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하한선 규정도 GPA 가입 기피 요소로 작용
- GPA에서는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자격심사나, 상품 또는 서비스 선정에 있어서 오프셋⁴⁾을 부과하거나 고려하는 것이 원칙상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발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여 개도국은 GPA 가입시에 국산품 포함 요건과 같은 오프셋 사용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경우 GPA 가입을 위한, 체약국들과의 양자협상 과정에서, 오프셋 정책의 대상기관과 분야를 모든 체약국들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는 정부조달정책을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예외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담으로 작용하여 GPA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양허 수정 및 정정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민영화된 공기업을 GPA상의 개방기관에서 제외하는 문제임.
- 현 GPA에서도 민영화된 기관의 양허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철회에 대한 여타 회원국의 동의 확보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미 민영화된 기관이 GPA 의무에 구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4) 공급업체가 구매자의 조달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특정 프로젝트를 의미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먼저, 무기나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업자가 관련 기술을 구매국으로 이전한다든지 혹은 현지 투자 등을 통해 구매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적 오프셋 구매와 구매국의 제품을 일정 부분 구매하는 간접적 오프셋 매매가 있다.

- 회원국들은 양허표 수정 제안국과 반대국 간의 이견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중재절차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분쟁해결 사항은 현재 WTO 분쟁해결양해(DSU) 개정협상의 진전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DSU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되 복수국간 협정으로서 GPA의 분쟁해결 절차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DDA 2차 양허안 중 건설산업 관련 사항

- DDA 협상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은 2002년 6월말을 시한으로 정하여 각국이 관심있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1차 양허 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03년 3월 자국의 시장개방계획을 담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한 데 이어, 2005년 5월말에 2차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
- 우리나라는 2002년 6월말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 외에도 서비스 산업의 진출 유망지역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중국, 동남아 등 총 36개국에게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하였고 2003년 3월말까지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 25개국이 우리가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법률, 교육,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양허한 시청각, 환경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허를 요청하여 왔는데, 이를 참조하여 정부는 2003년 3월 31일 법률, 국제배달, 고등교육 등 UR 당시 양허되지 않았던 20여개 업종을 새로 포함하고, 금융, 건설, 유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 기존 양허를 개선하는 내용의 1차 양허안을 제출
- 2차 양허안은 mode 4와 관련하여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의 양허에 중점을 두어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보수 서비스, 경영자문 서비스, 회계사, 건축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을 양허 대상에 포함
- 국내적으로 민감하여 그동안 양허하지 않았던 시청각 서비스 중 영화비디오 상영서비스와 라디오·TV 서비스, 보건의료, 뉴스 제공업 등은 이번 2차 양허안에도 포함하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하였음.

□ 수평적 양허

▶ Mode 4 관련

- Mode 4의 범주는 Mode 3과의 연계 여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Mode 3과 연계된 Mode 4의 범주에는 기업내 전근자⁵⁾, 사업상 방문자⁶⁾ 등이 포함되고 Mode 3과 연계되지 않은 Mode 4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⁷⁾, 독립전문가 등이 포함

·우리나라는 현재 입국목적(기업내 전근, 기업설립, 서비스 판매 혹은 계약 체결)에 따라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에게 90일~3년까지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데, 2차 양허안에서 “계약서비스 공급자”라는 새로운 입국목적 분류를 허용

mode 4 관련 현행 규정 및 2차양허안

| 입국목적별 분류 | 현행 | 2차양허안 |
|---------------------------------|-------------|--------------|
| 기업내 전근자 - 임원 · 상급관리자 · 전문가 | 최장 3년, 갱신가능 | 좌동 |
| 기업 설립자 - 임원·상급관리자 | 90일 한 | 좌동 |
| 서비스 협상/계약 체결자 -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 90일 한 | 좌동 |
| 계약서비스공급자 - 서비스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 미양허 | 12개월 중 3개월 한 |

자료 : 건설교통부, WTO 서비스 협상의 이해

5) 기업내 전근자(ICT)는 한 회원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다른 회원국에 지사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지사자회사에 파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6) 사업상 방문자(BV)는 기업 설립에 관계된 자(personnel engaged in establishment)와 서비스 판매자(service seller, 다른 회원국에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자)로 구분된다.

7) 계약서비스 공급자(CSS)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 또는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기업의 상업적 주재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이다.

·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① 체결된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상사의 주채를 통하지 않고 공급할 목적으로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
- ② 파견되는 직원은 동 기업에 최소 3년간 재직한 자로 해당 분야 학사 또는 동등 이상 학력 및 실무능력 겸비
- ③ 국내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격 소지
- ④ 동 기업은 공중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 ⑤ 이들의 체류기간은 12개월중 3개월을 또는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 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양허

-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정의 :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채를 하지 않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동 법인과 우리나라 법인간 서비스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

·국내기업에 고용되기 위해 우리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제외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대상자도 제외)

·계약서비스공급자의 자격요건

- ① 서비스 공급자가 소속된 외국법인은 동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우리나라 법인과 이행기간이 1년 이내인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함
- ② 동 서비스 공급자는 입국신청을 하기 전에 동 법인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체류 기간은 동 계약 이행을 위한 1년 이내로 제한
- ③ 국내 관련 법령 및 APEC Engineers, EMF 국제자격 Engineers, Washington Accord 등 관련 국제자격에 부합되는 학력, 전문자격 및 전문적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경력을 소유한 자로 한정
- ④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

- 양허활동 범위 및 분야

- ① 산업설비 또는 기계를 판매한 해외 법인에 소속된 자로서 동 산업설비 또는 기계를 구매한 국내 법인에 파견되어서 그 산업설비 또는 기계의 설치·운용·보수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건설장비, 발전설비는 제외)
- ② 정보기술, e-business, 생명공학, nano 기술, 디지털 공학, 환경산업관련 기술적 지식 또는 기능 관련 자문 서비스
- ③ 국내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소와 회원계약(membership contract)을 통한 외국 회계기준 및 감사, 회계사의 교육 및 감사 관련 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환 관련 자문서비스
- ④ 공동계약(joint contract) 형태로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간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제공되는 건축설계 서비스
- ⑤ 경영자문서비스
- ⑥ 다음 분야의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기반한 시행(implementation) 서비스, 데이터 운영 (data management)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 (data system) 서비스, 자동차 관련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자동차 설계사)

- 각 분야별 양허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량적 상한(numerical ceiling) 설정 가능

계약 서비스 공급자 관련 양허 내용

| 양허분야 | 자격요건 |
|-------------------------|--|
| ① 기계설치·보수 | ① 외국법인과 국내 법인간 이행기간 1년 이내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② 입국신청 전 동 법인에 1년 이상 근무조건 및 체류기간을 1년 이내 계약기간으로 한정 ③ 국내 관련 법령 및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학력, 전문자격 및 전문직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경력을 소유 ④ 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 수령 |
| ② 기술자문 (첨단과학분야) | |
| ③ 회계사(국내 회계법인 등에 대한 자문) | |
| ④ 건축사(국내 건축사와 협업 조건) | |
| ⑤ 경영컨설팅 | |
| ⑥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 |
| ⑦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 |
| ⑧ 데이터 운영 | |
| ⑨ 데이터 시스템 | |
| ⑩ 자동차 설계 | |

자료 : 외교통상부, WTO DDA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Revised Offer) 해설자료

▶ 기업내 전근자

- 기업내 전근자의 범위를 1차 양허안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로 한정하였으나, 2차 양허안에서는 자회사(subsidiary)와 지사(branche)로 수정하고 계열회사(designated affiliate)를 추가하면서, 자회사, 지사, 계열회사의 개념을 note에 명시⁸⁾
- 체류기간 관련 기존조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명확성 제고

▶ 외국인 주식투자

- 1차 양허안에서 통신, 방송, 항공 등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제한된다고 기재하였으나, 2차 양허안에서는 양허를 하지 않았거나 분야별 양허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한 분야 대신에, 현재 분류 확대 문제가 논의 중인 에너지, 항공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주식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양허범위에 대한 명확성 제고
- 공기업의 민영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

□ 분야별 양허

▶ 건축설계서비스(8671)

건축설계 서비스 2차 양허안 내용

| | 시장접근 (MA : Market Access) | 내국인대우 (NT : National Treatment) |
|----------------------------------|---|------------------------------------|
| Mode 1 (국경간 공급) | 상업적 주재 요건 필요 | 제한없음 (None) |
| Mode 2 (해외소비) | 제한없음 (None) | 제한없음 (None) |
| Mode 3 (상업적 주재) | 제한없음 (None) | 제한없음 (None) |
| Mode 4 (자연인의 주재) | 수평적 양허안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양허불가 (Unbound) | |
| Additional Commitments (추가양허) | - 1), 2), 4): '96. 1. 1부터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 건축사의 건축설계 서비스 공급허용 - 외국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6개 건축사 시험과목중 건축법규와 건축설계에 대한 시험만 합격하면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 | |

8) 자회사(subsidiary)란 모회사(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B)를 의미하며, 계열회사(designated affiliate)는 같은 모회사가 2개 이상의 자회사들(B, C)을 소유 및 통제하는 경우 동 자회사들(B, C)을 의미한다. (상법 제 342조,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지침)

- Mode 1 시장접근에서 언급한 상업적 주재요건은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주에게 외국에서 작성한 설계 결과물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야 함을 의미함.
 - 이러한 요건은 건축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국내 건축사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실설계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임.
 - Mode 1 ~ 3 내국인 대우에서 None 규정은 국내 법규를 만족시키면 외국 건축사를 차별하는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의미
 - Mode 4에서 수평적 양허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입국목적(기업내 전근, 기업설립, 서비스 판매 혹은 계약체결, 서비스 공급)에 따라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만으로 서비스 공급 목적의 입국을 제한
 -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개방은 수평적 양허에 명시되어 있으나, 추가 양허에서도 건축설계항목에 외국 건축사가 국내자격 없이 국내 건축사와 공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 엔지니어링서비스(8672),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8673),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8674)

엔지니어링 관련 2차 양허안 내용

| | 시장접근 (MA : Market Access) | 내국인대우 (NT : National Treatment) |
|------------------|-------------------------------------|------------------------------------|
| Mode 1 (국경간 공급) | 제한없음 (None) | 제한없음 (None) |
| Mode 2 (해외소비) | 제한없음 (None) | 제한없음 (None) |
| Mode 3 (상업적 주재) | 제한없음 (None) | 제한없음 (None) |
| Mode 4 (자연인의 주재) | 수평적 양허안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양허불가 (Unbound) | |

- ▶ 건설기계 및 장비 임대 서비스(83107)

건설기계 및 장비 임대 서비스 2차 양허안 내용

| | 시장접근 (MA : Market Access) | 내국인대우 (NT : National Treatment) |
|------------------|-------------------------------------|------------------------------------|
| Mode 1 (국경간 공급) | 제한없음 (None) | 제한없음 (None) |
| Mode 2 (해외소비) | 제한없음 (None) | 제한없음 (None) |
| Mode 3 (상업적 주재) | 제한없음 (None) | 제한없음 (None) |
| Mode 4 (자연인의 주재) | 수평적 양허안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양허불가 (Unbound) | |

▶ 건설서비스

건설업 2차 양허안 내용

| 분야/업종 | 시장접근 (MA : Market Access) | 내국인대우 (NT : National Treatment) |
|------------------------|--|---|
| 건설서비스 (CPC 511-518) | 1) 양허불가(Unbound)** (단, 5111은 예외) 2) 제한없음 (None) 3) - 하도급 의무제도가 있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양허불가(Unbound) | 1) 양허불가(Unbound)** (단, 5111은 예외) 2) 제한없음 (None) 3) 제한없음 (None) 4) 제한없음 (None) |

주 : 양허불가(Unbound)** : 기술적 실현가능성 희박에 따른 unbound

- UR 최종 양허 내용과 비교할 때, DDA 서비스 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양허했다는 점
 - 양허방식은 수평적 양허를 통해 mode 4, 즉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밝히고 있는 방식이고 양허내용에서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외국 법인에 고용된 자(EJP: Employee of a Juridical Person)에게만 양허를 하고 법인과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개별 공급자(IP : Independent Person)에게는 양허하지 않음.
 - 계약서비스 공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출국 해당 법인과 우리나라 법인 혹은 자연인 간의 서비스 공급 계약이 전제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당 법인과 적어도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 법규에 부합하거나 관련 국제기구 등이 인정하는 학위, 기술 자격 그리고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건설업의 경우, 발전시설 공사에 대한 양허 유보가 이번 양허안에서 제거되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일반 건설업의 지사, 전문건설업의 지사와 자회사의 설립 등 UR 최종양허표에 따라 96년 혹은 98년부터 양허가 된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님.

■ FTA 협상 이슈 중 건설산업 관련 사항

(1) 서비스 교역

▶ 양허표 기재방식

- FTA협상에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방식으로는 negative방식과 GATS방식이 주로 채택
 - GATS방식은 positive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negative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인데,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시장접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에서 positive 방식이 원칙이며 negative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일단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일부 제한할 경우에는 이를 양허표에 기재하여야만 제한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시장접근 제한조치 외에 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가 존재할 경우 이를 별도의 양허표 상에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내국민대우란에도 negative 방식이 채택
- 한·칠레 FR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negative 방식을 채용
 - 양허표에서 유보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이 허용
 - 이러한 방식은 지역경제통합에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자세를 반영

▶ 수량규제 방식

- FTA에서는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비차별적인 수량규제를 함에 있어 별도의 부속서를 두고 거기에 모두 열거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양허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수량적 규제를 열거하는 GATS 방식과 구별됨.
- 우리나라가 FTA 양허표를 작성하기 위해 채택한 negative 방식에는 비차별적 수량규제를 부속서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됨.

▶ 최혜국 대우

- 한·칠레 FR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지 않았음.
-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최혜국대우를 규정
- 최혜국 대우는 해당 FTA 이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다자간무역협정 등에 의해 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FTA의 체결 상대국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원칙
- 최혜국대우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대상국의 서비스 산업 환경과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FTA 협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추측 가능
- 그러나 FTA가 다자간교역질서에 배치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최혜국대우를 규정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 Mode 4

- 한·칠레 FTA에서는 상용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상사주채원 등 상업적 주재와 관련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보다 늦게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상대국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 서비스 공급자도 포함
-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의 상호인정 문제도 한·칠레 FTA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다루고 있음.
- 계약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개방 조치는 DD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2차 양허안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에서 계속적으로 포함될 전망

▶ 건축설계 서비스

- 한·칠레 FR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 우리나라는 건축설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지 주재에 관한 유보를 하고 있음.
- 이는 DDA 협상에서 동 서비스의 양허와 관련하여 mode 1에서 상업적 주재가 필요하다고 한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①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② 대한민국 내에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③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조건 부과

▶ 건설업

- 건설업에 대해서도 FTA의 양허 내용은 DDA 양허내용과 동일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 부과

- ①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최소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
- ③ 일반건설업자가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일정비율을 하도급하여야 함. (20억 ~ 30억원 규모의 공사 : 최소한 계약금액의 20%, 한화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 최소한 계약금액의 30%)

(2) 정부조달

- 정부조달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제교역에서 정부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GPA 체결국이 38개국에 불과하고, 개도국은 정부조달을 경제개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GPA 가입을 주저하고 있음.

·이미 개방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보호, 지역균형개발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를 주저하고 있음.

- GPA에 대한 각국의 이견은 양자협상인 FTA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정부는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부문의 경우 GPA보다 자유화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보호 등 정치적 목적도 고려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탄력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양허하한선 인하

- GPA 체결국 대부분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양허하한선을 유지하고 있음.

GPA 양허하한선의 각국 비교

(단위: 천 SDR)

| 구분 | 일본 | 미국 | E C | 캐나다 | 한국 |
|-------------|------------------|-------|----------------|-------|------------|
| 중앙정부 | | | | | |
| 물품 | 130 | 130 | 130 | 130 | 130 |
| 서비스 | 130 | 130 | 130 | 130 | 130 |
| 건설서비스 | 4,5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설계, 컨설팅 서비스 | 450 | 130 | 130 | 130 | 130 |
| 지방공공단체 |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 | 37州 | 전지방자치체 | | 9道, 서울, 5市 |
| 물품 | 200 | 355 | 200 | 355 | 200 |
| 서비스 | 200 | 355 | 200 | 355 | 200 |
| 건설서비스 | 15,000 | 5,000 | 5,000 | 5,000 | 15,000 |
| 설계, 컨설팅 서비스 | 1,500 | 355 | 200 | 355 | 200 |
| 정부관계기관 | 74기관 | 7기관 | 상수도, 운수 에너지 | | 23기관 |
| 물품 | 130 | 400 | 400 | 355 | 450 |
| 서비스 | 130 | 400 | 400 | 355 | - |
| 건설서비스 | 15,000 | 5,000 | 5,000 | 5,000 | 15,000 |
| 설계, 컨설팅 서비스 | 450 | 400 | 400 | 355 | 450 |

자료 : 조달청(2001)

- GPA 체결국 증가를 통해 정부조달의 국제교역 규모를 증가하기에는 양허하한선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 등 여타 국가의 조달시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13만 SDR 그리고 건설의 경우 450만 SDR 이상의 조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주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이 많지 않은 반면, 선진국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기업이 비교적 많을 것이므로 개도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선진국 조달시장에는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현재 수준의 양허하한선을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없음.

- GPA 미가입국인 칠레와 FTA를 협상하면서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을 5만 SDR로 하향 조정
- 이외에도,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상기 경우 양허하한선을 10만 SDR로 하향 조정하였고 일본·싱가포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도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을 5만 SDR로 하향 조정

▶ 양허대상기관 확대

- GPA 가입국은 부속서를 통해 양허대상기관의 리스트와 하한선을 제시하는데, 양허대상기관과 관련하여 각국간 행정부의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기관도 같지 않고 국가에 따라서는 일부 지방정부를 GPA 양허대상기관에서 제외하기도 함.
- 한·칠레 FTA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양허대상기관에 포함하였으나 일본·싱가포르 EPA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및 서비스는 양허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역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특히, 공기업의 경우, 계약국에 따라 운영중인 공기업의 수에 차이가 많아 국가간 양허대상기관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최근 GPA 협상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기업으로 양허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경우 각계약국들이 운영하는 지방자치체도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양허기관의 동등성 확보가 문제가 될 전망
- 현재 GPA는 양허대상이 되는 공기업에 관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양허목록상에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FTA 협상을 통해 공기업의 정의에 대해 합의 필요
- 양허대상기관의 범주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을 배제하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한·칠레 FTA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GPA 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을 정부지분의 공개매각으로 정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기관으로 명백히 하였으나, 일본·싱가포르 EPA에서는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 임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영화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급자 자격심사

- 입찰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은 당해계약을 이행할 기업의 능력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즉, 국내 공급자에 비해 상대국 공급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술적 능력을 과약함에 있어, 공급조직 간의 법적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조달기관이 속한 영역에서의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세계 사업 활동에 근거하여 판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

- DDA 협상, 정부조달협정 재협상, FTA체결 등은 우리 건설산업의 현재 상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
- UR로 인해 민간시장이 개방되고 정부조달협정으로 공공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 건설산업에서 외국 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국내 진출 외국업체 명단(2005.8.10 현재)

| 업종 | 회사명 | 건설업 등록일 | 국가 | 시공능력 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백만원) | 국내공사 실적 ¹⁾ |
|----|------------|------------|-----|------------|-----------------------|--------------------------|
| 토건 | 다이세이건설(주) | 00.12.11 | 일본 | 22 | 988,212 | - |
| 토건 | (주)후지타 | 96.10.14 | 일본 | 298 | 47,085 | 16건 821억원 |
| 토건 | 중국건축공정총공사 | 96.10.14 | 중국 | 3,387 | 4,001 | 1건 17억원 |
| 토목 | 뷔그트라보퀴블리끄 | 03.11.07 | 프랑스 | 1 | 46,522 | 1건 1,152억원 |
| 토목 | 토요엔지니어링코리아 | 96.10.14 | 일본 | 242 | 6,422 | 17건 1,065억원 |

주: 1) 2005년 대한건설협회 신고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방된 DDA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제출한 2차 양허안, 정부조달협정의 재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 기체결 혹은 협상 과정에 있는 FTA의 건설산업 혹은 정부조달 관련 쟁점에는 이미 개방된 건설산업의 현황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건설시장 개방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으로 이어져,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 외국 건설기업들이 장벽을 느끼는 부분은 ① 국내의 독특한 영업 환경, ② PQ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의 우수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국내 현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용하여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사용해야 하는 점, ③ 턴키입찰시 불투명한 기술평가 과정 등
- 위에서 언급한 진입장벽의 역향을 하는 업계 관행이나 제도적 요인 등은 다자간 무역협상이나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건설시장 개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착되면 그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큼.

빈재익(부연구위원·jipins@cerik.re.kr)